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4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고동진 · 김선교
김위상 · 박충권 · 송석준
안철수 · 이인선 · 이종배
조승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들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4조 제1항 등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2호가목1)가) 중 “100분의 12”를 “100분의 12(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5)”로 하고, 같은 1) 다) 중 “100분의 6”을 “100분의 6(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8)”으로 하며, 같은 1) 라) 중 “100분의 3”을 “100분의 3(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)”으로 하고, 같은 목 4)가) 중 “100분의 10”을 “100분의 10(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3)”으로 하며, 같은 4) 다) 중 “100분의 5”를 “100분의 5(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0분의 65)”로 하고, 같은 4) 라) 중 “100분의 1”을 “100분의 1(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)”로 한다.

제30조의3제5항제3호 중 “제10조제1항”을 “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
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
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
액

- 1) 신성장·원천기술의 사
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(이하 이 조에서 “신성장
사업화시설”이라 한다)
및 신성장·원천기술 연
구개발을 위한 연구·시
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
이 조에서 “신성장연구개
발시설”이라 한다)에 투
자하는 경우

가) 중소기업의 경우: 10
0분의 12

나) (생략)

다) 나)에 해당하지 아니
하는 중견기업의 경
우: 100분의 6

-

- 1) -----

가) ----- 100
분의 12(사업장이 제3
0조의3제5항에 따른
위기지역에 있는 경우
에는 100분의 15)

나) (현행과 같음)

다) -----

- 100분의 6(사업장이
제30조의3제5항에 따

라) 가)부터 다)까지 외 의 경우: <u>100분의 3</u> 2) · 3) (생략) 4) 1)부터 3)까지 외의 자산 에 투자하는 경우 가) 중소기업의 경우: <u>100 0분의 10</u> 나) (생략) 다) 나)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중견기업의 경 우: <u>100분의 5</u> 라) 가)부터 다)까지 외 의 경우: <u>100분의 1</u>	<u>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8)</u> 라) ----- ----- <u>100분의 3(사 업장이 제30조의3제5 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 의 5)</u> 2) · 3) (현행과 같음) 4) ----- ----- 가) ----- <u>100 분의 10(사업장이 제3 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 에는 100분의 13)</u> 나) (현행과 같음) 다) ----- ----- - <u>100분의 5(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 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0분의 6 5)</u> 라) ----- ----- <u>100분의 1(사</u>
--	---

나. (생 략) 3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 제30조의3(고용유지중소기업 등 에 대한 과세특례) ① ~ ④ (생 략)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(이하 “위기지역” 이라 한다) 내 중견기업의 사업 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 세연도에도 적용한다. 1. 2. (생 략) 3.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 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<u>제10조제1항</u>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	<u>업장이 제30조의3제5 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0분 의 25)</u> 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30조의3(고용유지중소기업 등 에 대한 과세특례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 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----</u>
---	--